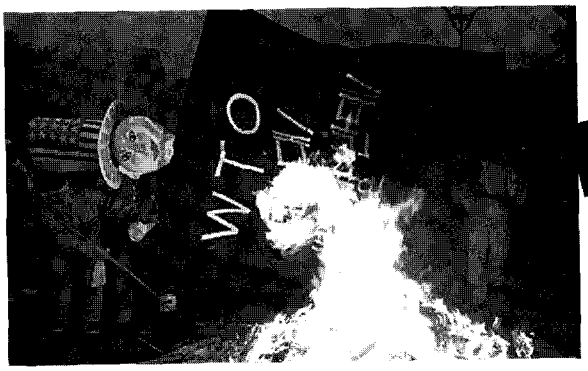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선

국내농업!

정부는 '先대책 後협상' 원칙을 견지한 농업통상대응 전략을 수립하라 !

급물살 탄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 세부협상

세계무역기구(WTO)의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부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WTO 농업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의장 종합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오는 3월 말 DDA 농업협상세부원칙(모델리티)을 최종 논의하여 수립할 예정이다.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는 2월(24일~28일)과 3월(25일~31일) 각각 한차례씩 2차 논의에 걸쳐 논의된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각 나라들은 이를 토대로 '품목 이행계획서(C/S)'를 작성해 9월 15일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인 '제 5차 각료회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각 국은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관심 품목별 · 국가별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오는 2004년 12월까지 DDA농업협상은 최종 완료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사안인 '쌀 관세화유예' 문제 또한 이기간 내에 결과를 내야 한다.

협상 내용이야 어떻든, 일정만 보더라도 참 숨가쁜 일정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논의 · 확정될 내용을 살펴보면 숨은 더욱 가빠진다. 더구나 만약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의 주장대로 합의가 된다는 생각에 이르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물론,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할 당시 합의된 기본원칙처럼 모든 협상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 국내 정부의 협상력이나 협상전략 전술의 준비상태를 보고있으면 '뛰는 가슴'이 쉽게 진정되진 않는다.

DDA 농업부문세부협상,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번 DDA농업협상은 한마디로 말해 국내농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의 승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농업뿐만 아니라 DDA협상이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중심의 협상으로 끝난다면 이로 인한 국내 경제와 식량안보의 폐해는 '다원적 가치의 손실', '농업기반 붕괴', '도시화로 인한 사회비용 증폭', '주곡자급기반 상실' 등 단순한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타날 것임은 뻔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을 비롯한 케언즈그룹 등 수출강대국들은 이미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전략과 방침을 세워놓고 세계의 모든 곳간을 열어놓으려 하고 있다. 모든 나라에 대한 엄청난 관세감축과 함께 국내보조 감축, 수출보조감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를 비롯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과 식량수입국을 상대로 협상테이블을 통한 '테러'를 자행하려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번 농업협상에서는 도대체 무얼 논의하고 확정하려는 것일까? 또한,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수출강대국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는 걸까? 반면에 유럽국가들이 뭉친 EU와 개도국들은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가?

이번 농업협상에서 도대체 무얼 논의하고 확정하려는 것일까?

우선, 이번 2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될 논의 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각국의 농업에 대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개도국 우대 ▲비교역적 관심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를 꼽는다면 시장접근 즉, 관세감축논의를 비롯해 시장접근물량(TRQ)의 확대, 특별세이프가드(SSG)의 폐지 유무이다. 또한, 개도국 우대와 국내보조문제에 대한 논의 또한 국내농업부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논의 과제에 속한다.

좀더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시장접근 (관세감축, 시장접근물량 확대, 특별세이프가드 철폐)

① 관세감축에 대한 각 국의 주장

앞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시장접근 논의과제에 속하는 '관세감축' 논의는 '농산물수입국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량에 대해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얼마만큼 낮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케언즈그룹(농산물수출강대국)은 일명 '스위스공식'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EU와 일본, 동구권 국가들은

〔표 1-1〕 관세감축 방식

구 분	내 용
스위스공식	•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낮은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는 방식 • 감축 후 최종관세 = (기준관세율×관세율상한)÷(기준관세율+관세율상한)
UR방식	• 모든 협상대상 품목의 평균감축률과 품목별 최소감축률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품목별로 신축성을 가지고 관세를 감축해 나가는 방식 • 선진국은 6년간 품목별 최저 15%, 평균 36% 감축 개도국은 10년간 품목별 최저 10%, 평균 24% 감축

'UR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가장 큰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스위스공식'과 'UR방식'의 차이점은 뭘까?

위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위스공식'은 낮은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의 대폭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선진국들의 경우는 감축 폭이 작아 그다지 영향이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300%~800%에 이르는 경우 그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3.8%인데 이를 UR방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할 경우 감축 후 최종관세가 48.5%가 된다. 반면, 미국이 제안한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감축 후 우리나라 양허관세율은 12.5%가 돼 결국 UR방식보다 무려 36%나 더 떨어지는 셈이다.

즉,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관세가 낮은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의 경우 감축 후 최종관세의 변화가 적은 반면 기준관세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의 폭이 80%~90%에 달해, '스위스공식' 도입을 주장하는 미국과 케언즈그룹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케언즈그룹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정수준 이하의 관세의 경우 스위스공식으로 감축할 경우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하의 관세는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률로 감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는 '미국주장 방식'과 동일하게 감축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행첫해에 관세감축률의 50%를 먼저 동일하게 감축하고

〔표 1-2〕 〔스위스 공식 이용시 관세 감축률(예)〕

기준관세율	감축후 최종관세율	감축율
5 %	4.2 %	16.7 %
50 %	16.7 %	66.7 %
200 %	22.2 %	88.9 %
500 %	23.8 %	95.2 %

※ 적용공식 : 최종관세 = (25×기준관세율)÷(25+기준관세율)
위의 공식 중 25는 미국이 제안한 관세상한율 25%를 의미함

나머지는 5년 동안 균등 감축하여 철폐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EU는 UR방식의 관세감축으로 농산물 전체 평균 감축률 36%, 품목별 최소감축률 15%로 하되 개도국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행기간도 선진국은 2006년부터 6년간, 개도국은 10년간으로 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동구권 국가들은 UR방식의 유지를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감축률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②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대한 각 국의 주장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UR이행기간의 최종연도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5년 동안 20% 확대를 주장(미국)하고 있고, 한술 더 떠 이에 대한 관세를 5년동안 감축하여 철폐하자는 주장(케언즈)을 펼치고 있다. 이는 곧 수입국의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물량을 대폭 늘리고 이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자는 것이어서 국내 시장의 엄청난 교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에 EU와 우리나라는 시장접근물량을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정비율 증량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특별세이프가드 철폐에 대한 각 국의 입장

이번 협상에서는 급격한 수입물량 확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발효없이 자동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인 '특별세이프가드(SSG)' 제도의 존폐여부도 큰 대립점에 서있다.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를 비롯한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과 동구권 국가는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협상의 타결점을 찾는 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감축을 비롯한 시장접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대될것으로 보여져 이에 따른 국내농업의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지난 UR협상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힘의 논리'로 흘러가면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이 주장하는 '스위스공식'이 결정되는 날에는 국내 400만 농민은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밥상엔 '우리 농산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국내농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국내보조 (감축대상보조, 허용대상보조, 생산제한직접지불, 최소허용보조)

농업보조부문에 대한 협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욱 힘들다.

그 이유는 '시장접근' 부문 논의에서 UR방식이라는 한목소리를 외쳤던 EU가 또 다른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다양한 국내보조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먼저 '감축대상보조'란 정부가 국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방식)을 말한다. 또한, '허용대상보조'는 UR협정 당시 '농가와 농업분야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허용한 보조로서 가격지지 효과가 없고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조를 말한다. 그 종류에는 정부서비스를 비롯한 연구, 지도,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 국내 식량 원조, 조건불리지역 지원, 자연재해 구호 등이 있다.

'생산제한직접지불'은 앞에서 서술한 '감축대상'과 '허용대상'의 중간방식을 말하는데, 무역왜곡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농민이 생산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지불되는 보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최소허용보조'는 말 그대로 가격 지지효과와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일정금액 하에 최소한의 보조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조의 형태가 감축대상 보조라 하더라도 선진국의 경우 연간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범위 내는 허용대상 보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농업의 입장에선 완전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WTO체제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국내농업이 최소한의 살길을 찾기 위해서,' 감축대상보조'는 UR방식의 점진적인 감축 또는 유지,' 허용대상보조'는 범위와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생산제한직접지불'과 '최소허용보조'는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관철해야할 최소한의 주장이다.

① 감축대상보조(Amber Box) 감축에 대한 각국의 주장

미국은 '감축대상보조'의 경우 향후 5년동안 '96년~98년 평균 농업생산액 대비 5% 수준으로 동률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철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케언즈그룹은 선진국은 5년동안, 개도국은 균등하게 감축 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EU마저도 '보호총량측정치(AMS)' 기준으로 55%를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EU가 국내보조부문에서 개도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유럽공동농업정책(CAP)'를 추진하면서 총 예산의 50%이상이 농업예산에 소요되다보니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은 미국 등 수출국들의 꾐에 빠져 3년내 보호총액총량치(AMS)를 철폐하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 UR협정 당시 개도국들이 아무런 협상전략을 세워놓지 못하고 선진국에 '따라가기식' 협상에 임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결국,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이 종국엔 '농산물수입국'이 될것이 뻔한데도,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장에 대한 단기적 수출시장을 겨냥한 극히 '협소한 시각'으로 기인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동구권 국가들은 각국의 보조총액을 계산해 선진국은 6년동안 20%,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는 UR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 등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빈곤문제 해소 등을 위한 "개발박스'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② 허용대상보조(Green Box) 감축에 대한 각국의 주장

허용대상보조 감축에 대해 가장 강경한 내세우는 그룹은 단연 '케언즈그룹'이다. 케언즈 그룹과 일부 개도국들은 허용대상보조의 기본요건인 '무역왜곡 효과가 없거나 최소화'에 대한 정의 재정립과 요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의외로 허용보조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다. 현행 허용보조 범위와 기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농업법'을 통해 다양한 허용보조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를

통해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농민들에게 쏟아 붇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식 보호무역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EU와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는 허용보조의 '완화' 및 '확대'에 힘을 실고 있다. EU는 환경보호와 농촌발전, 동물복지, 개도국에 한해 특정한 필요성에 의한 보조 등을 허용보조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요건완화'와 '소득보험 · 소득안정화프로그램'에 필요한 조치를 허용보조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가족농 지원', '핵심주곡 생산 유지에 대한 지원'을 허용보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③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에 대한 각 국의 주장

생산제한직접지불에 대한 주장은 극과 극이다.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EU, 동구권 국가들은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정책을 무역왜곡효과가 적은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④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감축에 대한 각 국의 주장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각 국의 주장은 '대폭감축 및 철폐'와 '현행유지'로 나뉜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케언즈그룹과 EU는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대폭감축과 철폐의 대상을 선진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관철'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현행수준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허용보조'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현행 정책의 유지를 위해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또다시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DDA협상에서 논의될 국내보조에 대한 입장은 크게 수출국들의 '감축 및 철폐'와 수입국들의 '유지 및 확대'가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개방을 목적으로 세계의 모든 무역보호장치를 해체하기 위해 철저한 '자국이익 중심의 전략'으로 무장하고 나선 미국을 비롯한 케언즈그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건 무시할 수 없다. 만일, 이들의 주장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내농업은 '약 한번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죽는 꼴'이 될 것이다.

3. 개도국 우대 및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개도국 우대와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은 앞서 살펴보았던 논의 과제와는 달리 폭이 넓고 애매한 주장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해 관세, 보조금, 이행기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 우대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EU의 경우 개도국을 '선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으로 구분해 선진국과 선발개도국은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량 제한없이 모든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량 가운데 50%이상의 무관세를 적용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보다시피 이번 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유지'가 중요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

롯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등은 환경보호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케언즈그룹, EU등은 비교역적 관심사항 문제는 '투명하고 목적에 합치' 해야 하며,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DDA 농업협상을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DDA농업협상에서 미국 측이 주장하는 스위스공식이 채택된다면 고율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우리 농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UR방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개도국들을 상대로 '스위스방식' 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정부가 미처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한 '국내보조' 부문의 경우 또한 '현행수준 유지' 는 물론 '확대' 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DDA농업협상은 오는 2004년 영향을 미칠 '쌀 재협상' 에서의 '관세화 유예' 를 비롯해 '관세감축방식' ,' 개도국지위 유지' 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쌀관세화 유예' 와 '개도국지위 유지' 를 핵심 2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UR방식의 관세감축' 관철을 위한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더구나, 이번 협상에서는 개도국들의 결집과 목소리의 힘이 커지고 있으며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어서 정부의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도 협상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오는 9월 제출할 '이행 계획서' 를 반드시 개도국 기준으로 작성하는 등 개도국 지위를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 지난 1993년 철저히 실패한 UR협상을 전후로 우리 농업 · 농촌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희생이 되어왔고, 현재 급격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처절하게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산업의 이익이 농업의 가치를 대신해 주었는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말로만 '생명산업' , '식량안보' 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제협상 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쳇말로, 미국과 케언즈 그룹이 '농업의 다원적기능 중 경관을 유지를 하려면 골프장을 지어라' 또, '농가소득 문제는 사회보장정책으로 해결하라' , '식량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가 팔아준다' 식의 주장은 '그들만의 오만한 착각' 일 뿐이다. 정부는 그들의 주장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4700만 국민과 400만 농민들의 '생존권' 을 담보로 맡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협상력과 목소리' 를 높여내라는 것이다.

단지 국내 농업을 '무조건 보호' 하기 위한 '쇄국정책' 을 펼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일원인 400만 농민을 대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농민생존권과 농업기반유지, 식량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상 테이블에만 나서면 위축되고 '일관된 협상원칙

의 부재'로 인해 스스로 혼란에 빠져 결국 '대세'에 따르는 협상력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울러, 정부는 왜 그토록 수많은 세계 각 국의 농민들이 'WTO 세계화' 반대를 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한다. 이는 단지 각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세계식량을 비롯한 자본과 기술 등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고 있는 강대국과 수출국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가야할 길은 단순 명쾌하다. 국내에서는 철저한 '선대책 후협상'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협상 테이블에서는 보다 강력한 농업통상대응활동을 벌이라는 것이다.

우리 400만 농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문명의 발전은 공유하고 나누면 그 효과는 두 배가된다. 그러나, 민족문화와 식량, 생명산업인 농업만큼은 모두 나누고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배의 효과는커녕 결국 한쪽을 말살하거나 속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사상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쉽게 버리지 못한다. 우리 400만 농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최소한의 보호', '지킬 건 지키자'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DDA농업협상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UR수준의 최소화하고 쌀관세화 유예 관철은 물론, 개도국지위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통상관련협상의 협상권을 농림부 이관하고 농업계의 추천인사를 농업통상자문관으로 임명하여 통상협상능력을 높여내야 한다. 또한, 국내 NGO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 NGO와의 교류활동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민족내부간 거래 인정받아 통일농업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WTO 개방에 따른 소득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직접지불제 확대도입, 통상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출국중심의 DDA농업협상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농가소득보장과 농업기반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범정부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 해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농민 편에서 농산물 협상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한농연